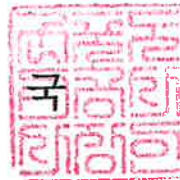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10월 31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37 호

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제3항 제2호 중 “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“별표2”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”을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“별표 1”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”로 한다.

제22조(금품 등의 수수 금지) 제3항 제2호의 “별표2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2]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

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준용

-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5만원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안 전 감 사 부
입 안	직 위 성 명	안 전 감 사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청 럽 감 사 팀 장 이 태 권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형 태 (3 9 0 - 7 6 4 7)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~ ③ (생 략) 1. (생 략) 2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<u>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</u> “별표 2”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<u>금품등</u>	제22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</u> <u>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</u> <u>및 동 시행령 별표 1의 금액을</u> <u>초과하지 않는 범위</u> 로 한다

현 행
[별표2] <p align="center"><u>음식물 · 경조사비 · 선물 등의 가액 범위</u></p> 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<u>3만원</u>
개 정 안
[별표2] <p align="center"><u>음식물 · 경조사비 · 선물 등의 가액 범위</u></p>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1 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<u>5만원</u>